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 이유

현행 규정은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조업실적을 서면 또는 무선(음성)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어업통계 신뢰성과 어업인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조업실적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어선안전조업법」이 제정(법률 제16569호, 2019. 8. 27. 제정, 2020. 8. 28. 시행)된 점 등을 감안하여 일부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적 방식을 통한 보고방법 추가(안 제5조제1항)

서면 또는 무선을 통한 기존 조업실적 보고방법 외에도 전자적 방법으로 조업실적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조문 정비(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

수산업협동조합의 ‘어업정보통신국’ 명칭을 ‘어선안전조업본부’로 변경하는 등, 「어선안전조업법」 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7. 3. ~ 8. 12.) 실시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비대상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3조”를 “「어선안전조업법」 제21조제2항”으로 하고, “어업정보통신국에 위치를 보고하면서”를 “어선안전조업본부에 위치를 통지하면서”로 하며, “보고하게”를 “보고하게 하였거나, 어선안전조업본부가 운영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보고하게”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6조 중 “어업정보통신국장”을 각각 “어선안전조업본부장”으로 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보고 요령 및 시기 등) ① 연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4	제5조(보고 요령 및 시기 등) ① ---		
조제1항에 따라 선장으로부터 제	출받은 연근해어업의 보고서를 다	-----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연근해어업의 허가	-----		
를 받은 자가 해당 어선의 선장에	게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3조	-----		
에 따라 <u>어업정보통신국에 위치보</u>	<u>고를 하면서</u> 조업상황 및 어획실	- 「어선안전조업법」 제21조제2항		
적을 함께 <u>보고하게</u> 하였을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u>어선안전조업본부에 위치를</u>		
		<u>통지하면서</u> -----		
		----- <u>보고하게 하였거나, 어선</u>		
		<u>안전조업본부가 운영하는 전자적</u>		
		<u>방법으로 보고하게</u> -----.		
②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은 제1항	에 따라 제출받은 연근해어업의 보	② -----		
고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	할 <u>어업정보통신국장</u> 에게 송부하여	-----		
야 하고, <u>어업정보통신국장</u> 은 송부	받은 연근해어업의 보고서와 제1항	- <u>어선안전조업본부장</u> -----		
받은 연근해어업의 보고서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고	-----, <u>어선안전조업본부장</u> ----		
받은 조업상황 및 어획실적을 종합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	-----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어획실적 보고의 특례) 연근해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대한민국	제6조(어획실적 보고의 특례) -----		
과 인접국 간의 어업협정에 따른 인		-----		

접국의 관할 수역에서 조업하는 경우에는 그 협정에서 정하는 보고 방법 및 보고 시기에 따라 관할 어업 정보통신국장에게 어획실적을 보고하여야 하고, 어업 정보통신국장은 보고받은 어획실적을 종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어선
안전조업본부장-----
 -----, 어선안전조업본부장-----

 -.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연 락 처	(044) 200-5520, 5521